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2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이용선・황희・이학영

주철현 • 오세희 • 양부남

박희승・임미애・김 윤

김성화 • 박지혜 • 박정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에서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기간을 보장

해주기 위해 공장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3조의6 및 제33조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장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유권자"라 한다)가 태양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장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1. 소유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소유권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소유권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제7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승계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공장건축물 소유권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7항제6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 · 의무의 · 승계 략) <u><신 설></u>) (생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장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유권자"라 한다)가 태양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장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소유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상속인 2. 소유권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유권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신 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략)

⑧ ~ ③ (생 략)

법인

제13조의6(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7

--.

- 1. ~ 5. (현행과 같음)
- 6.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및 승계에 관한 사항
-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 ⑧ ~ ⑬ (현행과 같음)